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동의안

의안 번호	1078
----------	------

제출년월일 : 2006. 5.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폐촉법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및 주변영향 지역 결정 · 고시 협의와
- 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의 협의 등 “폐촉법”이 정하는 각종 후속절차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 결정 · 고시(폐촉법 제17조 제1항 동시행령 제17조제1항)
-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환경상 영향 조사하고 의견수렴(폐촉법 제17조 제2항)
-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의회 의원,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폐촉법 제17조의2 제2항, 동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3.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
-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첨 부 : 1. 주변마을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안) 1부
2.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운영계획 1부.
3. 관계법령(발췌분) 1부. 끝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설치운영 관련 —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

구 분	법 정 동	마 을 명	대표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비 고
계	6개리동	12개마을	13명			
의회			윤성렬	영천동491		당연직
봉양읍	삼거리	제 비 랑	이규만	삼거리211		
		두 무 실	신종철	삼거리235-4		
서부	신 동	주 막 거 리	송동혁	신동 168-5		
		새 터	최종진	신동 397		
		가 리 천 돌 머 르	조영관	신동 482-7		
	천남동	본 동	이종범	천남동 144		
		성 황 당	이진희	천남동275-2		
		고 지 골	전상희	천남동70-2		
		사 리 골	김종식	천남동387		
화산동	명지동	무 지 골	허 인	명지동 385		
	강제동	고 지 골	신영배	강제동621-2		
	산곡동	산 으 실	최홍순	산곡동 649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운영계획

I.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 사업 개요

- 위치 : 제천시 신동 동막골 62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772,513m²(시설면적187,832m²,주변녹지584,681m²)
 - 매립시설 121,553m²(1단계40,994m²) • 소각시설 50톤/일
 - 음식물처리시설 20톤/일 • 재활용선별시설 30톤/일
- 사업기간 : 2003. 1월 ~ 2008. 6월
- 총사업비 : 39,765백만원(국비12,851백만원,지방비26,914백만원)

□ 추진 상황

- 자원관리센터 입지결정·고시 : 2003. 10. 28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완료 : 2004. 7. 13~2005. 7. 12
- 용지, 지장물 보상 협의완료 : '04.7.~'05. 10. 13
 - 보상규모 : 토지147필464,826m², 지장물37건
 - 보상비 : 6,950백만원
- 공사계약(조달청) : 2006. 3. 23
- 설치계획승인 및 각종인허가 완료 : 2006. 3. 24
- 공사착공 : 2006. 3. 28
 - 입목벌체 및 진·출입로 개설사업 중

□ 향후추진계획

-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 '06. 12월
- 구조물 및 플랜트시설 완료 : '07. 12월
-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 및 시운전 : '08. 3 ~ 6월
- 매립시설, 재활용기반시설 준공 : '08. 3월

II.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세부계획

지난 3월 28일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의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함에 따라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 조사”와 “주변지역지원 사업” 등을 선정할 『주민지원 협의체』를 관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운영기준(근거법령)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환경상 영향지역)

○ 폐촉법 제1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7조 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 결정·고시

□ 환경상 영향조사 및 의견수렴

○ 폐촉법 제17조 제2항

- 주민지원 협의체가 선정한 전문기관으로 환경상 영향조사하고 결과 수렴

□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등

○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방법

- 법령 : 폐기물 매립시설 100만m² 미만(15인 이내)
- 조례 : 폐기물 매립시설 10만m² 이상(15인 이내)
- 실제 : 우리시 매립시설 121,553m²

- 주민지원 협의체의 위원

-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의회 의원(당연직)

-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한 경우, 매립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
 - 위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 위원 임기 : 2년(시임 등으로 새로이 선정된 위원임기 전임위원 잔여임기)
 - 위원장 선출 : 위원 중 지원협의체 의결로 선임
 - 회의소집 : 위원장 직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 의 결 : 재적위원 2/3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지원 협의체의 기능(하는 일)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제천시)에 통보
 - 주변영향지역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주민지원 사업의 선정 등 협의
 -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협의
 - 주민감시요원 수 조정 및 주민감시요원 추천
 - 기타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의결

□ 주변영향지역의 구분(환경상 영향지역 결정·고시 이전적용)

○ 폐촉법 제17조 제3항

- 직접 영향권 : 환경영향조사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 간접 영향권 : 환경영향조사결과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지역외의 지역(폐기물 매립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 소각시설은 300m이내)

2. 우리시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안)

□ 구성·운영방침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 결정·고시하여 환경상 영향지역 주민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 우리시는 자원관리센터조성사업 중이고 아직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물 우선 매립시설 2km 이내 주변지역 자연부락별 주민대표로 협의체 구성·운영
- 향후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에는 실제 영향 지역 주민대표로 협의체 구성 운영

□ 구성·운영개요

○ 구성시기

-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 : 2006. 3. 31(충북도 공고 제2006-178호)
- 구성기한 : 2006. 5. 30이전

*우리시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5월까지 마무리 하려는 것은 폐촉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 이를 우리시에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임

○ 구성인원 : 15인 이내,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자격기준】 - 폐기물 제18조 제1항 【별표2】

-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 시의회 의원
- 시의원(1) : 자원관리센터가 소재하는 당해지역(서부영천동)시의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6. 5. 31지방선거기준 서부 영천동이 포함되는 제천 시의원“다”선거구(중앙 의림명동, 서부영천동, 용두동) 현역 시의원으로 우선 구성하고 지방선거 후 당선 의원으로 교체
-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 주민대표(12) : 폐기물 매립시설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봉양읍 제비랑, 두무실, 신동 가리천, 시라골, 성황당 등 12개 마을의** 지역주민 중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의회에서 협의결정
-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전문가 2인이라 함은

- 전문대학이상의 환경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 환경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위원의 임기,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은 법규정과 동일하여 생략

□ 구성 위원의 결격사유(폐지법 제17조의2)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 환경상 영향조사의 실시

-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
-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기에 앞서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의 의견수렴(단,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환경상 영향의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전문가의 의견 검토서로 대체 가능함) – 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
※ 이하 주변영향지역 주민편익시설설치 및 주민지원 사업 선정 등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은 법규내용과 동일하여 생략

3. 향후추진계획

- 관내 세명대, 대원과학대 등 공문발송 전문가 추천의뢰 중
-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주변마을 주민대표 선정 후 주변마을 주민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전문가 선정(2명)
- 2006. 5월부터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 협의체 본격 구성·운영

첨고자료**□주민지원기금 현황(목표:30억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원 금	이 자	비 고
합 계	3,033,180	3,000,000	33,180	
기 조성액 (2005년말)	2,033,180	2,000,000	33,180	
2006년도	300,000	300,000	-	
향 후	700,000	700,000		

※반입수수료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별도임(자원관리센터 준공 후)

□타 시·군 구성사례

시·군별	시 설 현 황		구 성 현 황		비 고
	종 류	규 모	기 준	구 성	
춘천시	매립시설	122천m ³	15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인 -시 의 원 2(입지지역 시의원) -주민대표 9(주변영향지역 거주자) -전 문 가 2, 시민단체 2 	
전주시	소각시설	400톤/일	15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인 -시 의 원 2(입지지역 시의원) -주민대표 10(주변영향지역 거주자) -전 문 가 2, 시민단체 1 	
김해시	소각시설	200톤/일	11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인 -시 의 원 1(입지지역 시의원) -주민대표 8(주변영향지역 거주자) -전 문 가 2 	
동해시	매립시설	277천m ³	15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인 -시 의 원 1(입지지역 시의원) -주민대표 7(주변영향지역 거주자) -전 문 가 2, 시민단체 2 	
부천시	소각시설 (삼정동)	200톤/일	11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인 -시 의 원 1(입지지역 시의원) -주민대표 6(주변영향지역 거주자) -전 문 가 2 	

□ 매립장 부지 2㎢ 이내 주변지역 현황

구 분	법 정 동	마 을 평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6개동	12개마을	419	987	
봉양읍	삼거리	제 비 랑	18	34	
		두 무 실	20	44	
서부 영천동	신 동	주 막 거 리	50	125	
		새 터	23	36	
		가 리 천 돌 머 루	42	104	
	천남동	본 동	41	102	
		성 황 당	21	35	
		고 지 골	44	101	
		사 리 골	28	75	
화산동	명지동	무 지 골	51	118	
	강제동	고 지 골	24	59	
	산곡동	산 으 실	57	154	

【관 계 법 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4.2.9>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2.8>

1. 직접영향권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영향권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지역으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대하여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를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편익시설·녹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구성기준 및 결격사유) ① 지원협의체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5.3.3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범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②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6.2.22 대통령령 제19352호]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결정·고시가 있은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시설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내역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4.8.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로 한다.

③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04.8.10>

④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8.10>

⑤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4.8.10>

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⑦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실시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제8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2] <개정 2004.8.10>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		폐기물소각시설	
조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인 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 이상	15인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인 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 미만	11인 이내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 한다. 다만, 정원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회의원
-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비 고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 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에 해당 시·군·구의회의원 각 4인과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또는 환경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2004. 12. 31 전문개정 조례 제 659호】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 협의체는 15인 이내로 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 시의회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서 정한다.

주변지역현황도

SCALE = 1:10,000

